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01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연간 인정 제한학점	학기당 인정 제한학점
최대 42학점	최대 24학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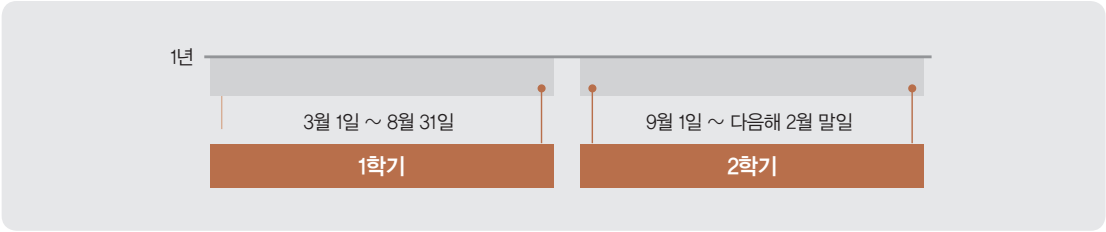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제한(수업을 통한 방법)	제한 없음(수업 이외의 방법)
평가인정학습과정	자격 취득
시간제등록	독학시험합격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
학점인정대상학교*	

*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

1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며,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함.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학기의 구분]



02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

학위취득 직전 학기에는 학기구분이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	마지막 학기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8월(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예) 2018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는 2018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

03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음.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청암예술학교(17년 10월 기준)

04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함.**
- 중복과목 처리기준(1과목만 인정)**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상기 기준은 중복과목에 대한 예시로서, 해당 기준 외에도 과목명 내 고유명사가 포함되거나,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대체과목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될 경우, 학습구분은 한 개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대체과목 예시]	
구분	예시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실험 ≍ ~실습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05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

- 학위연계**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 8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학점을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 해야 함.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

 -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학위수여 이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 단,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중요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

06

기존 학위보유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 추가 취득 시 주의사항

>

-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5.9.28)으로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수여 이전에 취득한 모든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서 인정 불가함.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에 학점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졸업한 전문대학, 대학교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서 인정 불가함.

07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주의사항

>

- 정해진 학위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취득 이후, 학위취소는 불가함.** 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08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기준

-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자로서, 최소학점 이상을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함.
 - ※ 최소 인정 학점 :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이상 /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 이상
- ❖ 학위취득을 위해 부족한 학점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만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 「과정이수 확인서」 (※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
 - 자격 : 「자격증 원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자격시험접수증 불가)
 - 시간제 : 시간제 「성적증명서」

09 학점은행제 간호 · 보건계열 전공 이용

- ❖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간호 · 보건계열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함.
- ❖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과목 [간호학-7과목, 보건학사-4과목]은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신규 이수해야 함.

10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 ❖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42학점)/1학기(24학점 이내)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
- ❖ 대학 재적(휴학)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일반선택'은 필수가 아닙니다.

학위요건 중 일반선택 학점에 대한 의무이수학점은 없습니다. 간혹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일반선택 학점이 부족하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 요건과 교양 요건을 제외한 학점(전문학사 20학점, 학사 50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도 되지만, 꼭 일반선택으로만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이수하면, 일반선택 학점으로 전환되는 개념은 아니고, 전공학점과 교양학점 기준을 초과하도록 취득한다면, 그만큼 일반선택 학점은 적게 수강해도 됩니다.

❖ '학위 수여'는 '학위 신청'이 필수!

-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 2월 학위 :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 학위 : 6월 15일 ~ 7월 15일
- 학위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학위수여가 불가합니다.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요건이 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 취득하는 학습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이 학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취득된 학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위 수여식은 2월에만 시행되며, 8월에는 학위수여식이 없습니다. 8월 학위취득자는 2월 학위수여식에 참여 가능합니다.

* 본 자료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 홈페이지 → 알림방 → 자료실 → 간행물

* "학점은행제 첫걸음"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